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항공기 내 동반 동물 관련 승객 협조의무 및 과태료 신설〉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30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 목 차

|                                                                             |   |
|-----------------------------------------------------------------------------|---|
|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2210830) .....                                                 | 1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3 |
| 1. 항공기 내 동반 동물 관련 승객 협조 의무 및 과태료 신설(안 제23조제1항<br>제8호 및 제51조제2항제1호 신설) ..... | 3 |

##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2210830)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6. 13.
3. 회 부 일 : 2025. 6. 16.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기내 동반이 가능한 것으로 자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동물(강아지, 고양이, 새 등)을 승객이 기내에 반입하는 경우 운송 용기에 넣어 객실의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해당 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하여 항공사 및 다른 승객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명확히 제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승객의 협조의무 중 하나로 운송 용기에서 기내 동반 동물을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51조제2항제1호 신설).

### Ⅲ. 검토의견

#### 1. 항공기 내 동반 동물 관련 승객 협조 의무 및 과태료 신설 (안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51조제2항제1호 신설)

개정안은 승객이 기내에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해당 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내거나 운송 용기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3조(승객의 협조 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1. ~ 7. (생략) | 제23조(승객의 협조 의무) ① -----<br>-----<br>-----<br>-----.                            |
| <u>&lt;신설&gt;</u><br><br>② ~ ⑨ (생략)                                                                          | 8.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내거나 운송 용기 밖에 두는 행위<br>② ~ ⑨ (현행과 같음) |
| 제51조(과태료) ① (생략)                                                                                             | 제5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br>-----<br>-----.                                                     |

| 현행                                                    | 개정안                                                                                                                                                                                      |
|-------------------------------------------------------|------------------------------------------------------------------------------------------------------------------------------------------------------------------------------------------|
| <p>&lt;신설&gt;</p> <p>1. ~ 3. (생략)</p> <p>③·④ (생략)</p> | <p>1.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기<br/>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br/>내거나 운송 용기 밖에 둔 자</p> <p>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br/>와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부칙</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br/>터 시행한다.</p> |

## 가. 검토의견

「항공보안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승객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며, 다른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항공운송사업자가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1)</sup>

### 1)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②~⑥ (생략)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
- 1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사람
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
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한편, 현행법령은 승객이 항공기에 동물을 동반하여 탑승할 경우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각 항공사들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운송약관<sup>2)</sup>으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공통적으로 항공사들은 기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내 반입 케이지에 보관하도록 하고 운항 중 밖으로 꺼낼 수 없도록 하고 있음.<sup>3)</sup>

### 【반려동물의 운송 관련 운송약관(예시)】

#### 제20조 운송 거절, 제한 등

##### 1. 운송 거절 권리

나. 대한항공은 아래의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하거나 도중 지점에서 하기(下機) 조치할 수 있다.

(6)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이 크게 짖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주위 승객의 안락한 여행을 방해하거나 유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제29조 반려동물의 운송

2. 여객이 동반하는 반려동물은 아래 조건에 의하여 수하물로서 운송이 가능하다.

가.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또는 애완용 새에 한한다.

나. 반려동물은 반드시 별도의 운반용 용기에 수용되어 항공기에 탑재 되어야 한다.

자료 : 대한항공 국내여객운송약관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현행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승객이 승무원의 제지에 불응했을 경우 승객의 행동을 명확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승객이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

#### 2) 「항공사업법」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3) 객실 내 동물 반입·운송에 대한 항공사 규정 현황(「참고1」 참조)

| 항공사    | 최대 무게<br>(용기 포함) | 운송용기 요건                             | 보관장소·방법                                              |
|--------|------------------|-------------------------------------|------------------------------------------------------|
| 대한항공   | 7kg              | - 가로 32cm x 세로 45cm<br>x 높이 19cm 이내 | - 앞좌석 아래 보관<br>- <u>운항 중 용기에서 꺼낼 수 없음</u>            |
| 아시아나항공 | 7kg              | - 3변의 합 115cm 이내                    | - <u>비행 중 용기에서 꺼낼 수 없음</u>                           |
| 제주항공   | 9kg              | - 높이 23cm 이내<br>- 3변의 합 100cm 이내    | - 앞좌석 아래 보관<br>- <u>운항 중 용기에서 꺼내거나<br/>안고 갈 수 없음</u> |

항공기 운항이 지연된 사례, 다른 승객이 털 알레르기성 기침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sup>4)</sup>, 해외에서 항공기 탑승 중 개물림 사고로 다른 승객이 다치는 사고<sup>5)</sup>가 발생하는 등 다른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승객이 기내에서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내거나 운송 용기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승객들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특히, 전세계 항공사들이 참조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지침서<sup>6)</sup>에서는 비행 중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운송용기에서 꺼내서는 안 되며 운송용기는 비행 중 열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Guidance for Passengers Traveling with their Dog or Cat in the Cabin】

##### [Dog and Cat Containers]

... Any dog or cat container used for in- cabin carriage of dogs or cats must comply with these standards, or it will be rejected by the airline for travel.

- A dog or cat, travelling in-cabin must be in an IATA compliant container that fits under the seat in front of the passenger or other place as specified by the airline. ...**(생략)**...

- Dogs or cats must not be removed from their travel containers during the flight. The travel container should not be opened during the flight.

자료 : IATA

4) 경향신문, 「반려동물 기내 탑승 급증...“안고 타겠다” 진상 승객에 항공기 지연 ‘부작용’」, 2018.10.19.

- 2018.1.24. ‘강아지를 안고 타겠다’는 승객과 승무원이 실랑이를 벌이면서 운항이 두 시간 지연

- 2018.5.11.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반려견을 케이지에서 꺼내어 알레르기가 있는 승객이 불편을 호소

5) 피닉스발 포틀랜드행 Southwest 항공편에 탑승했던 승객이 주인과 함께 앉아있던 개에게 물리는 사고 발생(AP News, 「Girl injured by dog during boarding for Southwest flight」, 2018.2.23.

6) Guidance for passengers Traveling with their Dog or Cat in the Cabin (「참고2」 참조)

유사 입법례<sup>7)</sup>로 「철도안전법」에서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82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람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항공기는 고도 상공에서 고속으로 운항하여 비행 중 비상 상황 대피가 극도로 제한되고 비행 중 즉각적인 외부 지원이 불가능하여, 동물이 승객을 물거나 조종실 근처로 돌진하는 등 동물로 인한 사소한 돌발상황이 보안 위협을 초래<sup>8)</sup>할 수도 있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보다 높은 안전기준이 필요한 **항공 운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기내 안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 운항 및 승객들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7) 그밖에 「도로교통법」은 도로상 안전을 위해 모든 차의 운전자가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여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제39조),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제156조).

8) 미국 US Airways(피닉스행) 승객이 개를 케이지에서 꺼내서 안았고, 해당 개가 승객과 승무원을 물어 조종사가 피츠버그 국제공항으로 비상착륙을 결정한 해외사례가 있음.

- UPI, 「Plane diverted for small dog bites」, 20210.12.6.

- CBS NEWS, 「Airline: Dog On Plane Forces Emergency Landing」, 2010.12.6.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 기내 동반동물을 운송용기에서 꺼내거나 운송용기 밖에 두는 행위’라는 개정안의 문언에 대해 이를 반대해석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동물을 운송용기에서 꺼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되어 IATA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이 있고,

실제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동물을 운송용기에서 꺼내어두는 행위만으로 처벌(과태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활용하여 대중교통 수단 객실에서의 준수사항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있음.

또한,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용기에서 꺼내거나 운송용기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보완이 필요해 보임.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제23조 제1항의 규제목적<sup>9)</sup>을 고려하면서,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규제의

---

9)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내용을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하되,<sup>10)</sup> 개정안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보다 적합한 개정 법률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나. 정부 의견

### 1) 국토교통부

개물림 등 실제 피해가 없었더라도 동물을 운송 용기 밖에 꺼내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IATA 규정에 따라 운송용기에서 동물을 꺼내는 행위를 지양해야 하나 하위 법령에 예외를 두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허용하는 것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물보호법」은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맹견 출입 금지장소 및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중교통수단 객실에 동물 반입 시 준수사항을 「동물보호법」에 통합 규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2) 법무부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기준 및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 기내 동반동물을 운송용기에서 꺼내거나

---

2. 흡연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10)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에 의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운송용기 밖에 두는 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580 |

## 참고 1

## 객실 내 동물 반입·운송에 대한 항공사 규정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 항공사        | 최대 무게<br>(용기 포함) | 운송용기 요건                                                    | 보관장소·방법                                              |
|------------|------------------|------------------------------------------------------------|------------------------------------------------------|
| 대한항공       | 7kg              | - 가로 32cm x<br>세로 45cm x<br>높이 19cm 이내                     | - 앞좌석 아래 보관<br>- <u>운항 중 용기에서 꺼낼 수 없음</u>            |
| 아시아나<br>항공 | 7kg              | - 3변의 합 115cm 이내                                           | - <u>비행 중 용기에서 꺼낼 수 없음</u>                           |
| 제주항공       | 9kg              | - 높이 23cm 이내<br>- 3변의 합 100cm 이내                           | - 앞좌석 아래 보관<br>- <u>운항 중 용기에서 꺼내거나<br/>안고 갈 수 없음</u> |
| 진에어        | 7kg              | - 높이 20cm 이내<br>- 3변의 합 115cm 이내                           | - 앞좌석 아래 보관<br>- <u>운항 중 용기에서 꺼낼 수 없음</u>            |
| 에어부산       | 7kg              | - 가로 41cm x<br>세로 21cm x<br>높이 24cm 이내<br>- 3변의 합 115cm 이내 | - <u>비행 중 용기 내에 보관</u>                               |
| 이스타<br>항공  | 9kg              | - 3변의 합 100cm 이내                                           | - 앞좌석 아래 보관<br>- <u>운항 중 용기에서 꺼내거나<br/>안고 갈 수 없음</u> |
| 티웨이<br>항공  | 9kg              | - 가로 37cm x<br>높이 23cm 이내<br>- 3변의 합 115cm 이내              | - 앞좌석 아래 보관<br>- <u>운항 중 용기에서 꺼낼 수 없음</u>            |
| 에어서울       | 7kg              | - 3변의 합 115cm 이내                                           | - <u>비행 중 용기 내에 보관</u>                               |
| 에어<br>프리미아 | 7kg              | - 가로 38cm x<br>세로 22cm x<br>높이 23cm 이내                     | - <u>비행 중 용기 내에 보관</u>                               |



## Guidance for Passengers Traveling with their Dog or Cat in the Cabin

This guidance is only intended to supplement and/or reinforce requirements in Container Requirement 1 (CR1) of the current edition of the IATA Live Animals Regulations (LAR) and the In-Cabin Live Animal Checklist in LAR Section 7.6.2 as it pertains to dogs and cats accompanying passengers in the cabin of aircraft. Unless otherwise permitted (e.g. assistance and emotional support dogs), all live animals transported by air must be placed in a container as described in the current IATA LAR. It is not intended for other species of animals traveling in cabin or any species of animal traveling in other areas of the aircraft. Individual carriers may have additional or more stringent policies to some of this guidance or components of CR1, so the individual carrier(s) being used for the journey should be consulted as part of planning the journey for in cabin carriage of dogs or cats. Travelling has an unsettling effect on animals and they must be disturbed as little as possible. Domesticated animals prefer dim light as this helps to calm them and reduce stress.

### Suitability For Travel

- **Is the dog or cat old enough to travel in cabin?**
  - Unweaned animals and animals under 8 weeks must not travel. Check with the government/country that you are traveling to from or via and the airline regulations for age policies as they may have more stringent requirements.
  - Airlines and destination countries have requirements for proof of age upon entry. Travelers should ensure to be compliant and have the necessary documentation.
- **Is the animal in suitable health for travel?**
  - Sick, injured, or debilitated animals may not be suitable. Be sure to have supporting documents for animals with chronic conditions, those traveling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or any other exception.
  - A health certificate is required for international travel and may be time sensitive.
- **You must obtain the appropriate import and other travel documents for international travel of your dog or cat.**
  - Allow enough time to obtain the documents and keep copies. Travelers to note that this could take several months.
  - Make sure to check the applicable laws / regulations for those countries your dog / cat is traveling to and connecting through for additional requirements. The airline or the country's embassy can be a source of such information.
- **Some airlines place travel restrictions on certain breeds of dogs or cats.**
  - Consult the airline(s) participating in the journey regarding these restrictions.
- **Airlines may have limitations on the number of dogs or cats permitted in-cabin.**
  - This can be an issue with some smaller aircraft in which the under-seat space is extremely limited. Contact your airline to clarify transport requirements.



- **Sedation / tranquilization is advised against for dogs or cats traveling in cabin.**
  - There is considerable risk in sedating animals transported by air, as tranquilizers reduce the ability of the animals to respond to stress during transportation.
  - If such drugs are administered, they must be under a veterinarian's direction and the airline should be advised of their use.
  - Airlines may refuse to carry an animal that is sedated / tranquilized at their discretion.

## Dog and Cat Containers

IATA does not certify, approve, sell or otherwise endorse any commercial dog or cat travel / shipping container as being compliant with standards in the Live Animals Regulations. It does provide standards for dog and cat travel / shipping containers in Container Requirement 1. Any dog or cat container used for in- cabin carriage of dogs or cats must comply with these standards, or it will be rejected by the airline for travel.

- **A dog or cat, travelling in-cabin must be in an IATA compliant container that fits under the seat in front of the passenger or other place as specified by the airline.**
  - There is very limited space for animal travel containers under the aircraft passenger seats. Only very small dogs or cats and their travelling containers will fit under aircraft seats.
  - Soft-sided containers may compress when inserted under the seat. Compression of the ventilation openings can result in reduced ventilation and heat buildup in the container leading to potential adverse consequences to the dog or cat contained therein.
- **Is the container of suitable size and construction for the size and weight of the dog or cat traveling in-cabin?**
  - Can the dog or cat sit erect, stand erect, turn around and lie down within it in a natural position?
  - Does the container have at least 16% of the area on its 4 vertical sides set up as ventilation openings?
  - Is the container escape-proof?
  - Is the container leak proof?
  - Does the container have a "Live Animals" label affixed to it?
- **Dogs and cats should be introduced to the travel / shipping container to be used for in-cabin carriage well before the journey so that their stress in being confined in it during the journey is minimized.**
- **Dogs or cats must not be removed from their travel containers during the flight. The travel container should not be opened during the flight.**
- **Ideally, the animal should be fed a light meal at least two hours before the flight, with a short drink and exercise immediately before crating.**
- **The traveling container must be able to contain any feces or urine produced by the dog or cat.**
- **The container must be clean and leak-proof and absorbent bedding must be provided.**
- **The passenger is responsible for the actions of their dog or cat while it is traveling in-cabin.**